

# 『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』

## 1. 관련 법령

- 가.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~제72조, 동법 시행령 제55조~제58조, 동법 시행규칙 제86조~제89조  
 나.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22호)

## 2. 건설공사발주자 등 주요업무

구분	시행시기	산업재해 예방조치 주요 내용	공사금액
발주자	'20.1.16.부터 시행	① (건설공사 계획 시)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② (설계계약 체결 시)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③ (건설공사계약 체결 시)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 ④ 설계자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확인(필요시 보완요청) ⑤ 수급인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확인 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확인(공사시작 후 3개월마다 1회 이상) ⑦ 소속 임직원을 지정하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(소속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 수행 가능) ⑧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 중단을 요청	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(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)
	종전부터 계속 시행	⑨ 도급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분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 또는 선임하고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통보 ⑩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⑪ 약천후 등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,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 요청하면 연장 조치(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) ⑫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	모든 공사
설계자	'20.1.16.부터 시행	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② 설계자는 기본설계 시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, 실시설계 시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	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
수급인 (시공사)	'20.1.16.부터 시행	①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②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며, 발주자는 변경요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 승인(발주자의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)	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
	종전부터 계속 시행	③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④ 약천후 등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,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 요청(사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) ⑤ 가설구조물의 붕괴·낙하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(공단 등으로서 해당 건설공사에 고용되지 아니한 자)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 ⑥ 공사중지명령,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명령을 받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	모든 공사

### 3.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의 구성

구분	포함 내용
기본 안전보건대장	① 공사규모,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② 공사현장 제반 정보 ③ 공사 시 유해·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
설계 안전보건대장	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②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·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③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④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⑥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
공사 안전보건대장	①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②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④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,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

### 4. 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 시 발주자 조치(요청일로부터 30일 내 설계변경 승인 또는 불승인)

변경 사유	확인내용
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재해발생 위험	-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-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-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(공단 제외)의 자격증 사본 -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공사중지명령,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명령	-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-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의 내용 -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-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-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### 5.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

조항	주요 내용	벌금	과태료
제67조(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)	- 건설공사 발주자의 계획단계, 설계단계, 시공 단계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	-	1천 만원 이하
제68조(안전보건조정자)	- 2개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혼재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	-	500만원 이하
제69조(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)	-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 불가 - 공사비 감소를 위한 위험한 공법의 사용 금지 -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변경 금지	1천 만원 이하	-
제70조(건설공사 기간의 연장)	- 불가항력,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으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	-	1천 만원 이하
제71조(설계변경의 요청)	- 설계변경 요청 사유를 명기하고,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의 설계변경 의무	-	1천 만원 이하
제72조(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)	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 사용 기준	-	1천 만원 이하

#### ※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게시

- 중부고용노동청 홈페이지(www.moel.go.kr/jungbu) 뉴스공지>알림>안내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인천광역본부>알림마당